



## 「KB 청년도약계좌」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: KB청년도약계좌

■ 상품특징: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

#### 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
	■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
	※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에서 아래 가입대상 ●~④ 요건 확인
	● 나이요건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※「병적증명서」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가.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·의무소방원 나. 사회복무요원 다.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가입대상	② 개인소득요건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<u>개인소득기준</u> 주1)을 충족하는 사람
	<ul> <li>가. <u>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</u></li> <li>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<sup>주2)</sup></li> <li>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<u>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</u></li> <li>※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<sup>주2)</sup></li> <li>주1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</li> <li>주2)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, 제12조제 3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</li> <li>3 가구소득요건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<sup>주3)</sup>을 충족하는 사람</li> </ul>
	가. <b>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</b> 이 직전년도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<b>기준 중위소득</b> (이하 "기준 중위소득")의 250% <b>이하</b> 일 것 나.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,

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, 연금소득,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. 가구원 <sup>주4)</sup> 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(주민 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)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(단, 형제·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,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음) 주3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4)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,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<sup>주5)</sup>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<sup>주6)</sup>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5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처리 주6) 「소득세법」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			
<ul> <li>가입신청(가입자격확인신청):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대상여부 조회 및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</li> <li>쌀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가입대상자 안내※ 안내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☎ 1397)에 문의</li> <li>적금가입: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해 지정된 기간 내 가입※ 지정된 기간 내 적금을 미가입한 고객은 다시 가입신청을 진행해야 함</li> <li>■ 일시납입 신규 ■</li> </ul>			
일시납입 방법: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완료하고, 해당 적금가입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하여 가입(최소 납입금액 200 만원)     일시납입 신청: 적금가입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(ylaccount.kinfa.or.kr)에 일시납입 정보 <sup>취</sup> 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신청이 완료됨     주) 일시납입금액, 일시납입기간 등			
<ul> <li>전 금융기관 1인 1계좌</li> <li>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 (※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)</li> <li>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, 공동명의 불가</li> <li>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</li> </ul>			
■ 자유적립식 예금			
■ 가입신청(가입자격확인신청): KB스타뱅킹, 영업점 ※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, 외국인 등 필요 시 영업점 신청 가능 ■ 적금가입 및 해지: KB스타뱅킹, 영업점 ※ <u>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</u>			

#### 계약기간 60개월 ■ 회차별 최소 1 천원 이상 1 천원 단위로.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70 만원 이하 ※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※ 연간<sup>주1)</sup> 납입한도 840 만원 이내 납입 가능 주 1) '23.7.10 가입 시 1 년차('23.7.10~'24.7.9), 2 년차('24.7.10~'25.7.9), 3 년차('25.7.10~'26.7.9), 4 년차('26.7.10~'27.7.9), 5 년차('27.7.10~'28.7.9) ■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(최소 납입금액 200 만원) ② 가입일부터 2개년주의 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,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납입중지 처리 및 정부기여금 미지급 저축금액 ④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※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 만큼 가입자가 선택하는 '월 설정금액'주3)으로 매월 전화납입되는 구조로 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 할 수 없음 (예시) 매월 50만원, 13개월, 총 650만원 일시납입 신청 가입일 1년차 2년차 일시납입 기간 추가납입 - '25.3.22~3.31 기간중 월 70만원 이내 '24.2.22 '24.2.22 '25.2.22 '24.2.22 납입 가능 ~'25.2.21 | ~'26.2.21 ~'25.3.21 - 만 13개월 경과 후부터 추가납입 가능 주2) (예시) '24.2.22 가입 시 2개년 '24.2.22~ '26.2.21 주3) 일시납입금액 선납 시 일시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금액으로,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시납입 정보 등록 시 40·50·60·70만원 중 선택한 금액 ■ 입금거래 정정(취소·변경 등)은 제한될 수 있음 기간 기본이율 연 4.5% 최초3년간 기본이율 적용금리 변경시점에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3년 초과~ (세금공제 전. 본 적금의 고시이율 적용 5년 이내 2024.4.1 기준) ※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,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기본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■ 우대이율: 최고 연 1.5%p ※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※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우대이율 제공조건 적용이율 (세금공제 전.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이체 연 0.6%p 2024.4.1 기준) 급여주1)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 자동납부 연 0.3%p

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

			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<sup>주2)</sup> 월수 36회 이상		
			②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<sup>주3)</sup>		
	 거래감사	연 0.1%p	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) 신규 가입 고객 또는		
	기네습시 	ენ 0.1%p	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		
			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된 개인소득 금액의		
	소득플러스	최고 연 0.5%p	소득요건주)을 충족하는 경우,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		
	포크트니프 		ㅇ 5회 : 연 0.5%p / 4회 : 연 0.4%p / 3회 : 연 0.3%p /		
			2회 : 연 0.2%p / 1회 : 연 0.1%p		
	주 1) 급여 인정 세부 기준 (※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) -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(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)에 건별 5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				
	급여이제 설식이 있는 경우  -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(월급/급여/수당/급료/상여/보너스/봉급/연금/성과급/보로금/임금/Salary/bonus/pay)가 기재된 건별 50 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- 급여이체 계약(신청)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(급여성 선일자, 급여성 탑라인, 기업인터넷뱅킹 등)을통한 건별 2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 2)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				
	-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(거래구분)이 아파트관리비, 지로, CMS, FBS 인 출금건에 한함 ※ 거래유형(거래구분)이 상기 외 출금 건인 경우 제외(국민카드, 공과금 등), 계좌간자동이체 출금 건				
	제외 주 3) 본인 명의로 KB Liiv M「청년도약 LTE 요금제」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 회이상 발생한 경우 (단, 1 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,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)주 4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주 5) 총급여기준 2,400 만원 이하, 종합소득기준 1,600 만원 이하인 경우 [표 1.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]상 개인소득구간이 1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				
최종이율 (세금공제 전,	■ 최저 연 4.5% ~ 최고 연 6.0% ※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				
2024.4.1 기준)	이율을 적용하고,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
이자지급시기	■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	
	■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 미만 절사) 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입금일 ~ 만기일 전일)/365				
DEDIOIT!	1회차 2회차 3회차 · · · 마지막회차 만기일				
만기이자 게시바버	의급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/365				
계산방법 (산 <del>출근</del> 거)			>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/365 		
\cac'			:		
			이크크에 오아저지요 오이스 // 소프트		
			:≫ 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/365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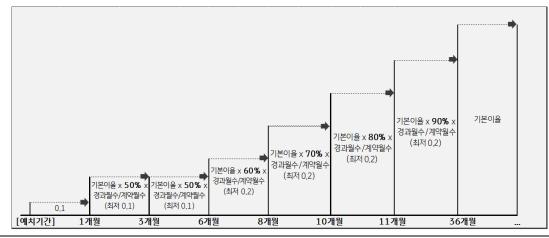
•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(단위: 연%)

	(EII: E 70)
예치기간	이율
1개월미만	0.1
1개월이상 ~ 3개월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3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6개월이상 ~ 8개월미만	기본이율 X 6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8개월이상 ~ 10개월미만	기본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0개월이상 ~ 11개월미만	기본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1개월이상 ~ 36개월미만	기본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36개월이상	기본이율

# **중도해지이율** (세금공제 전, 2024.4.1 기준)

- 1. 기본이율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(기본이율이 변경된 경우,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기본이율 적용)
- 2. 경과월수: 입금일 다음날부터 해지월 입금 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
- 3. 계약월수: 신규일 다음날부터 만기월 신규 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 ※ 단,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 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, 경과 월수는 계약 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- 4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-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  - ※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: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(50~9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예치기간 36개월이상 구간은 기본이율 적용)

#### 중도해지 이자계산 방법 (산출근거)



#### **만기후이율** (세금공제 전, 2024.4.1 기준)

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(단위: 연%)

경과기간	이율
만기후 1개월이내	기본이율 X 50%
만기후 1개월초과 ~ 3개월이내	기본이율 X 30%
- 만기후 3개월초과	0.1

- 1. 기본이율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
- 2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#### •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'**특별해지사유신고서**' 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 명시된 **증빙서류**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

- 해당사유: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가. 천재지변 나. 가입자의 퇴직 다. 사업자의 폐업
  - 라.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
  - 마.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  - 바. 가입자의 주택 취득주1)
  - 사.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(배우자의 출산 포함)
  - ※ 주1)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「소득세법」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「주택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
- 적용이율: 기본이율 적용(※ 우대이율 제외)
- 세제혜택: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-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

## 세제혜택

특별중도해지

■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

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

- ※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- ※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-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2 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
-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단, **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**

[표1]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
### 정부기여금

개인소득 구간			정부기여금 산정	기여금	월 최대
구간	총급여기준	종합소득기준	기준금액	지급비율	기여금
1	2,400 만원 이하	1,600 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40 만원 중 적은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.0%	24,000 원
2	2,400 만원 초과 3,600 만원 이하	1,600 만원 초과 2,600 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50 만원 중 적은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.6%	23,000 원
3	3,600 만원 초과 4,800 만원 이하	2,600 만원 초과 3,600 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60 만원 중 적은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7%	22,200 원
4	4,800 만원 초과 6,000 만원 이하	3,600 만원 초과 4,800 만원 이하	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	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.0%	21,000 원
5	6,000 만원 초과	4,800 만원 초과		미지급	

#### ■ 정부기여금의 산정

- ①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(가입자격확인신청)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(총 5회)에 따라 결정되며,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<sup>주)</sup>. 단,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<sup>주)</sup>됨
  - ※ 주) (예시) '23.7.10 일 가입 시 5 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 년차('23.7.10~'24.7.31), 2 년차('24.8.1~'25.7.31), 3 년차('25.8.1~'26.7.31), 4 년차('26.8.1~'27.7.31), 5 년차('27.8.1~'28.7.9)

## ② 개인소득 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소득기준을 준용하며,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

- ③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(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상 총급여(과세 대상급여)액, 종합(결정)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·연금·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
- ④ 「소득세법」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, 제 1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 지급 비율을 6%로 적용(가입 후 1 년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라 이후 지급 비율 변동 가능)
- ⑤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

#### ■ 유의사항

- ①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,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- ② 정부기여금의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(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)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
- ③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중도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
- ④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
- ⑤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⑥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잔여기간(일시납입 기간에서 가입유지 기간을 차감한 기간)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환수됨

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·지급액·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,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정부기여금 (계속)

#### ■ 중도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 후 **재가입 가능** - 중도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 후 **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(가입자격확인신청) 가능** (※ 재가입 시에도 만기는 동일하게 5년) - 가입신청(가입자격확인신청) 확인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 결정 - 일시납입 신규한 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일시납입 신규 불가 ■ 재가입 계좌의 정부기여금 -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(旣)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**(이하 '조정비율')을 적용**하여 산출 (원 미만 절사) ※ 조정비율 = (계약기간 - 재가입 전 가입기간) / 계약기간 ※ 기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납입한 경우에도 기 가입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재가입 ※ 가입기간: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으로. 가입기간 산정은 '월' 기준이며 일단위는 월로 올림하여 계산 및 '23.8.1 가입 후 '23.9.15 해지 → 재가입시 2개월을 차감하여 계산한 조정비율적용 조정비율 적용 ㅇ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ㅇ 가입 당일 해지한 경우 가입기간을 1개월로 계산 [예시] 개인소득 1구간 대상자가 '23.7.5 가입 및 '23.8.31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○ **조정비율 96.6%** (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) ⇒ (60개월-2개월)/60개월x100%=96.6666···% ○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한도 월 23.184원 → •(40만원×6.0%)ו96.6%=월 23.184원 ※ ● 1 구간 대상자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한도 ② 재가입 시 조정비율 ■ 재가입 및 조정비율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☎ 1397)에 문의 ■ KB 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 ■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(국민은행 출금계좌)로 입금됨 (단.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해지방법 미성년자, 임의단체, 비거주자,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)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,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) • 계좌에 **압류**<sup>주1</sup>, **가압류**<sup>주2</sup>, **질권**<sup>주3</sup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주 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원금 및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 이자지급 제한 주 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주 3) 질권설정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됨 ■ **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**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

지동이체	■ KB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, 자동이체 신청은				
	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				
재예치	<ul><li>불가</li></ul>	일부인출	<ul><li>불가</li></ul>		
질권설정	<ul><li>가능</li></ul>	양도	<ul><li>불가</li></ul>		
명의변경	<ul><li>불가</li></ul>	만기앞당김지급	<ul><li>불가</li></ul>		
담보제공	• 가능 :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역	l의 95%까지 가능			
휴면예금 및 출연	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 <sup>주)</sup>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주) 출연: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함  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/해지 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				
예금자보호	에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1)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주2)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 주 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조 제 3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조 제 2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조 제 1,3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조 제 1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조)주 2) 해지요구서: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				
자료열람요구권	<ul> <li>□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□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	

-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.
  - ※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
  - ※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-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3 유의 사항

알아두실 사항

- 이 적금은 'KB 국민은행'과 '서민금융진흥원'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19 조제 1 항, 동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, 제 3 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(P)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